Ver. 1.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2019.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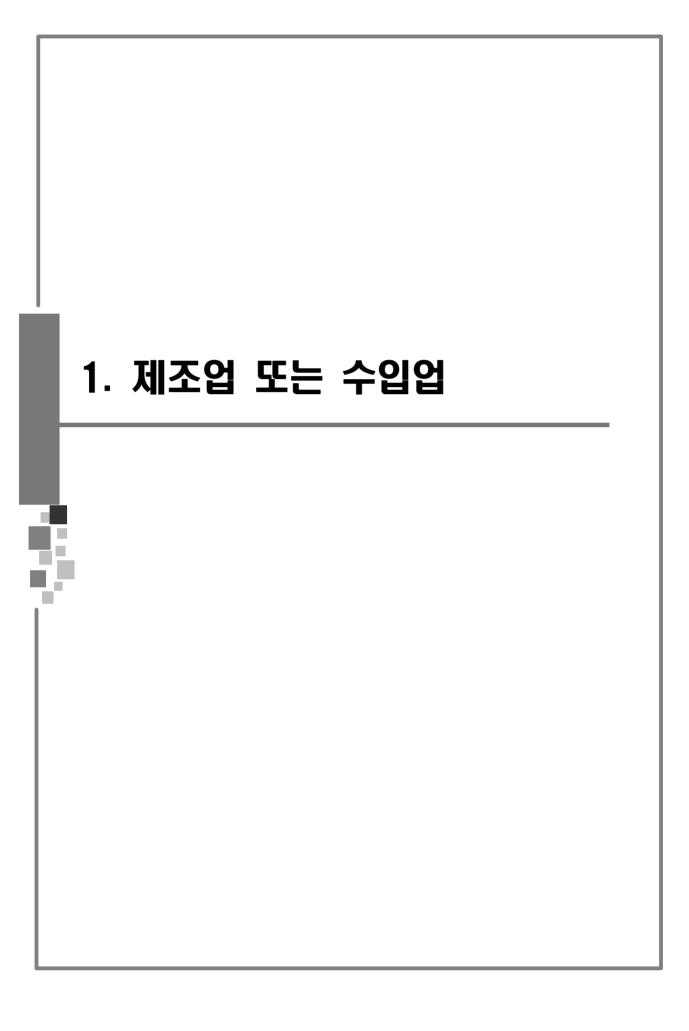


차 례

1. 승경	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1
1-1.	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1
1-2.	제조·수입업 등록 대상 부품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의 등록 필요 여부3
1-3.	현재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체를 부품 제조ㆍ수입업체로 변경하는 경우4
1-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5
1-5.	종전 규정에 따라 조립제조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6
2. 숭	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안전검사, 자체점검, 보험)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8
	유지관리업체는 별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9
	'19.3.28.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 10
	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은?11
	자체점검 '주의관찰' 항목을 해당월에 바로 조치한 경우 다음 달 점검의 면제여부 12
2-6.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13
3. 승경	강기 안전관리자(선임 및 교육)14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16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18
4. 승 7	강기 유지관리19
4-1.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 시 90대 적용 관련 ···································
4-2.	공동도급의 가능 대수 산정 기준21
4-3.	사무소가 여러 개의 시·도에 등록된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산정은? ·····22
4-4.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경우 공동도급 제한 대수 적용 여부2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진동소음계 등 설비24
4-6.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사(사업장) 추가25

5. 숭	강기 검사주기 변경 관련	26
5-1.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27
5-2.	정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28
5-3.	중대한 고장 발생 승강기의 검사주기 변경(6개월) 적용 시기	29
6. 기·	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30
6-1.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31
6-2.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	33
6-3.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	34
7. 승	강기 중대사고・중대고장	35
7-1.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관련	36
7-2.	중대사고 대상 확대 관련	37
7-3.	중대고장에 해당하는 사례	38
7-4.	승강기의 결함 판단 기준	39
8. 승	강기·부품 안전인증	4 0
8-1.	안전인증 대상은 어떤 것인지?	41
8-2.	종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은 유효한지?	43
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44
8-4.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45
8-5.	부품안전인증 중 제어반에서 PESSRAL 또는 PESSRAE 적용 시기는?	46
8-6.	승강기의 전자파 시험과 관련하여 전파법에 따른 성적서도 인정되는지?	47
8-7.	한국산업기술시헙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증서 및 부품 인증서 인정여부	48
8-8.	건축허가와 출고 또는 통관일자에 따른 개정 법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50
8-9.	안전인증의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는 무엇인지?	51
8-10). 동일 제조공장 수입업자 중 동일모델 수입과 다른 모델 수입의 차이점은?	52
8-11	1. 제조공장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수공장으로 인정 가능한지?	53
8-12	2. 상호인정협정 된 외국의 기관 또는 인정되는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4

8-13.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55
8-14. 종전에 검사특례를 받고 적용하던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이 가능한지? … 5	56
8-1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는 면제 대상이 되는지?	57
8-16.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은 어떤 내용인지?	58
8-17.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제어반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59
8-18.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50
8-19.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는 구성별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지? (51
8-20.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이동케이블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62
8-21. 출입문 조립체 중 카문, 비상가이드, 문짝의 두께의 적용방안은?(63
8-2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단일품을 2개 이상 적용하여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54
8-23.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개문출발방지장치 정지부품으로 겸용 사용 관련(5 5
8-24.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처리기간과 정기심사 신청 기한은?(<u> 5</u> 7
9. 숭강기 설치·검사기준(68
9-1.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69
9-2.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	7 0
9-3.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시기	<i>7</i> 1
9-4. 수시검사의 설계변경 및 부품교체	72
9-5. 안전검사에 대한 특례인정	73
9-6. 사용중인 승강기의 설치검사	74
9-7. 사용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i>7</i> 5
9-8. 공장출고일 또는 통관일이란?	76
9-9. 검사기준 적용시기 및 기준적용	<i>7</i> 7



【질의내용】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시·도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종전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1조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2019.9.27.)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도에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 승강기부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 마. 출입문 개폐장치
 - 바. 출입문 제어장치
 -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 가. 골조 구조물(Truss)
 - 나.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 다.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 라. 손잡이(Handrail system)
 - 마. 끼임방지 빗(Comb)
- 3.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

<u>승강기안전부품(</u>제16조 관련)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1. 개문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유압으로 구동되는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5.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	6. 상승과속방지장치(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means)				
또는 7. 완충기					
휠체어리프트	8.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9. 이동케이블				
	10. 제어반				
	11.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12. 출입문 잠금장치				
	13. 출입문 조립체				
	14.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1. 과속역행방지장치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에스컬레이터	3. 구동 체인				
~!! ㅡ ㄹ네 ~! 니	4. 디딤판				
	5. 디딤판 체인				
	6. 제어반				

1-2 ┃ 제조·수입업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의 등록 필요 여부

【질의내용】

제조·수입업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시·도에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제조·수입하고 있는 승강기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조 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이 아닌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1-3 │ 현재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체로 변경하는 경우

【질의내용】

현재,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 업체의 경우, 승강기 제조·수입업은 취소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을 등록한 업체가 개정된 법령 시행이후 승강기 제조·수입업을 하지 않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변경등록 신청 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사항 중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변경 후의 란에 '승강기부품 제조업' 및 '승강기부품 수입업' 만 체크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질의내용】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을 등록한 업체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관할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기한은 같은 영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19.3.28.)부터 6개월 이내 즉, 2019년 9월 27일입니다.

1-5 ▼ 종전 규정에 따라 조립제조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질의내용】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조립제조업 또는 에스컬레이터 조립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승강기 제조업"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조립제조 업 또는 에스컬레이터 조립제조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승강기 수입업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2-1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질의내용】

-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지?
- 가입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기존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 보험 등도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19.3.28.) 제30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2019.6.27.까지)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관리주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금액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에 적합할 것입니다.

2-2 ┃유지관리업체는 별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내용】

·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은 더 이상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유지관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종전 규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 3)이 삭제되었으므로, 2019. 3. 28. 이후부터 유지관리업자는 영업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종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3에서는 유지관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의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19. 3. 28.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3 ▮ '19.3.28.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질의내용】

·이 법 시행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도 '19.6.27.일 까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이 법 시행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 27조제2항에 따라 **숭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합격한 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생 략)

-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이하 생략)

2-4 ┃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은?

【질의내용】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사항이 있는지?

【회신내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과태료의 처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러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

2-5

자체점검 결과 '주의관찰'항목을 해당월에 바로 조치한 경우 다음 달 점검의 면제 여부

【질의내용】

-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가 '주의관찰'인 항목은 점검주기와 관계없이 다음달에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주의관찰' 결과가 나온 해당 월에 해당 항목을 조치하고 점검결과를 '양호'로 다시 입력하였다면 다음 달에는 해당 항목의 점검주기가 아니라면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시) 점검주기 3개월 항목, '19.5.4. 점검결과 주의관찰, '19.5.20. 조치 후 점검결 과를 양호로 입력한 경우

【회신내용】

자체점검 결과 '주의관찰'인 항목의 부적합 사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점검주기와 무관하게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셔야 하고 정보망에 그 결과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적합 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하시면 됩니다.(부적합 사항이 해소된 월이 3월이고, 점검주기가 3개월인 경우 6월에 해당 항목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참고.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제2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 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 2. <u>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u>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u>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도 점검</u>을 해야 한다.

(이하 생략)

2-6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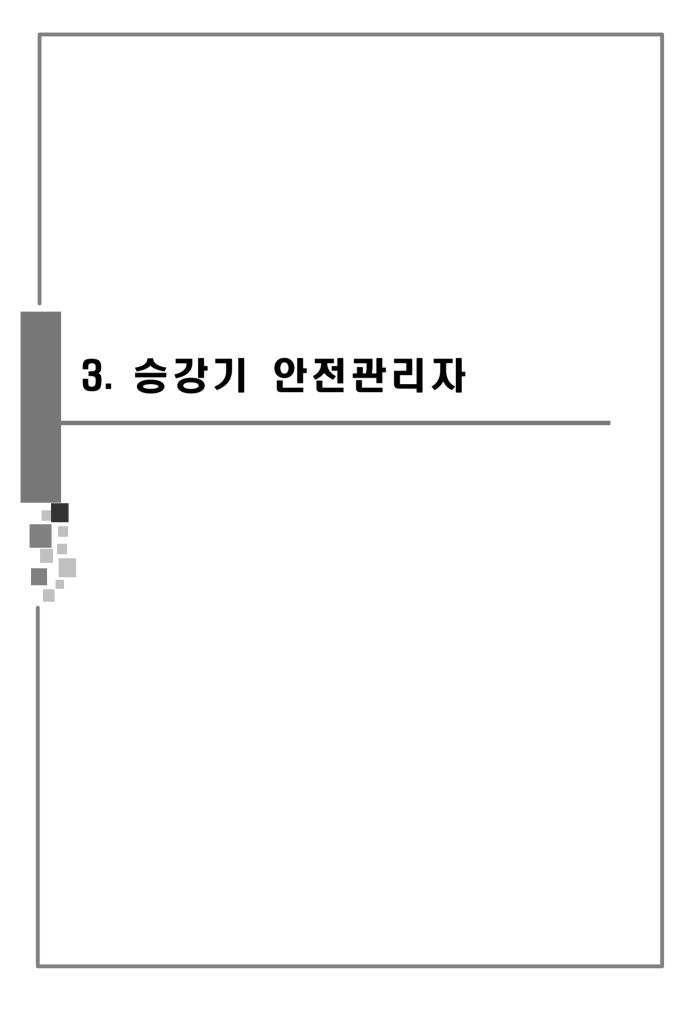
【질의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유효기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처리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제4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신청한 승강기의 경우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

참고로,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3-1 ┛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질의내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만약, 현재 안전관리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 또는 승강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자격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해당 교육 이수, 자격 취득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3. 승강기 안전관리자

3-2 ┃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질의내용】

-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요 건은 어떻게 되는지?
-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어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또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이며 2일에 걸쳐 교육이 진행 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3.28.)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제5항에 따른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가능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3-3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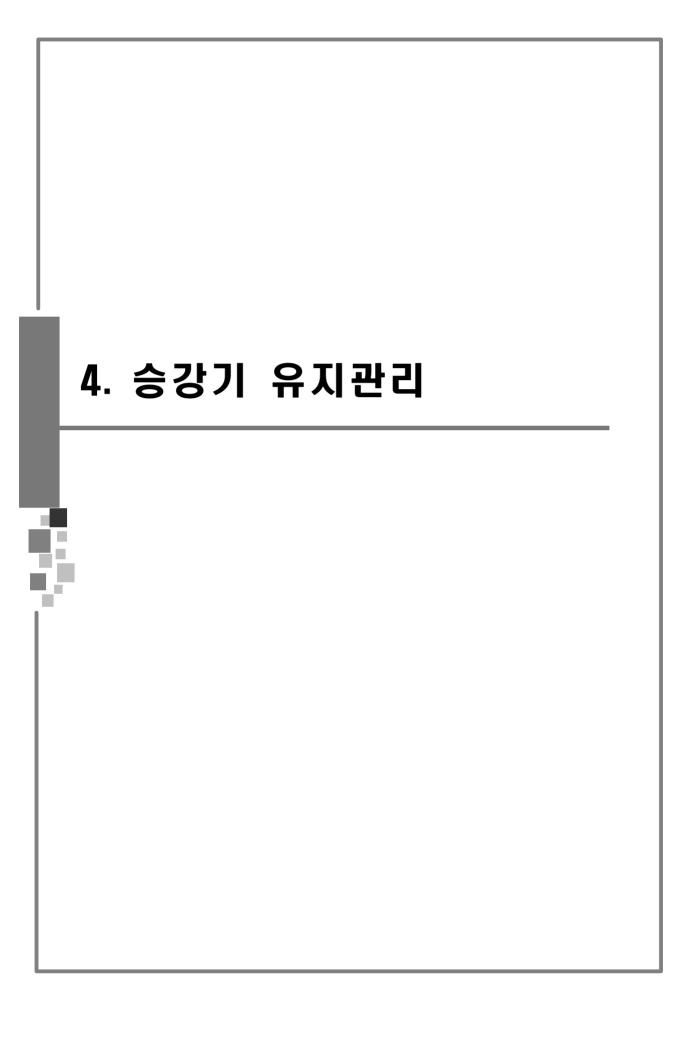
【질의내용】

다중이용시설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자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회신내용】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종전에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이미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별다른 조치 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승강기관리교육은 3년 주기로 받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4-1 ┃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 시 90대 적용 관련

【질의내용】

다른 시·도의 승강기를 몇 대(몇 명) 까지 점검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상한대수(기술인력당 90대를 곱한 대수) 규정이 적용 되는지? 만약, 해당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상한대수가 초과하는 경우 조치는?

【회신내용】

해당 규정에서는 90대 적용에 관하여 별다른 예외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시·도의 승강기를 1대(또는 1명)만 유지관리 하더라도 90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기술인력 10명, 동일 시·도 유지관리 시 상한대수 1,000대 다른 시·도 유지관리 시 상한대수 900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 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 3.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시행일(2009.3.28.) 당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호 개정에 따라 기술 인력이 부족하게 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므로, 경기도 안양시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자가 경기도 의정부시를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동일 시·도에서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2 ┃공동도급의 가능 대수 산정 기준

【질의내용】

제조업과 유지관리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시·도에 등록된 유지관리 기술인력은 10명이고, 실제 유지관리 계약대수는 800대인 업체입니다. 공동도급은 몇 대 까지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동도급의 가능대수는 시·도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에 따른 승강기 상한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하신 사례를 적용하면, 시·도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10명이므로 유지관리 승강기상한대수 1,000대를 기준으로 이의 50%인 500대까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단, 다른시·도의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유지관리 상한대수가 900대 이므로, 이의 50%인 450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 3.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참고로,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가 50%를 초과하는 업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비율 이하로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시·도에 등록된 전체 유지관리 상한대수의 60퍼센트
-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전체 유지관리 상한대수의 60퍼센트

4-3 ┃ 사무소가 여러 개의 시·도에 등록된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산정은?

【질의내용】

여러 개의 시·도에 사무소를 등록한 경우 공동도급 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내용】

여러 개의 시·도에 사무소를 등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합니다.

- 1. 여러 개의 시·도에 본사 형태로 사무소(주된 사무소)를 각각 등록한 경우
 - 각 각의 시·도별로 공동도급 비율을 따로 산정합니다.
 - * 각 각의 시·도에서 공동도급 월간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 하나의 시·도에 본사(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는 지사 형태로 사무소 (추가 사업장)를 등록한 경우
 -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시·도의 공동도급 대수를 합산하여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합니다.
 - * 일부 지역에서 공동도급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전체 공동도급 비율이 50% 이하이면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 (예시) 다음 표에서, 서울의 공동도급 비율이 70%이지만, 전체 합산의 공동도급 비율은 40%이므로 규정에 적합함

구 분	기술인력	월간 유지관리 상한	공동도급 대수	공동도급 비율
서울(본사)	10명	1,000대	700대	70%
부산(지사)	10명	1,000대	100대	10%
계	20명	2,000대	800대	40%

4-4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경우 공동도급 제한 대수 적용 여부

【질의내용】

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다. 유지관리 공동도급 제한 대수의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회신내용】

유지관리업무만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5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진동소음계 등 설비

【질의내용】

- · 등록기준에 따른 진동소음계는 1대의 기계로 진동·소음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 · 멀티테스터도 전류계로 인정되는지?
- •분동 3톤에 대한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 •진동계 및 소음계를 각각 구비하여도 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멀티테스터에 후크미터가 연결 가능하는 등 회로의 단선이 없어도 전류 측정이 가능하고, 전류의 측정범위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구동기 등)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함
- ·분동(3톤)의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등) 임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함(1회성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은 인정 안됨)

4-6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사(사업장) 추가

【질의내용】

서울에 유지관리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시에 지사(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가 변경 되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사(사업장)를 개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유지관리업이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청에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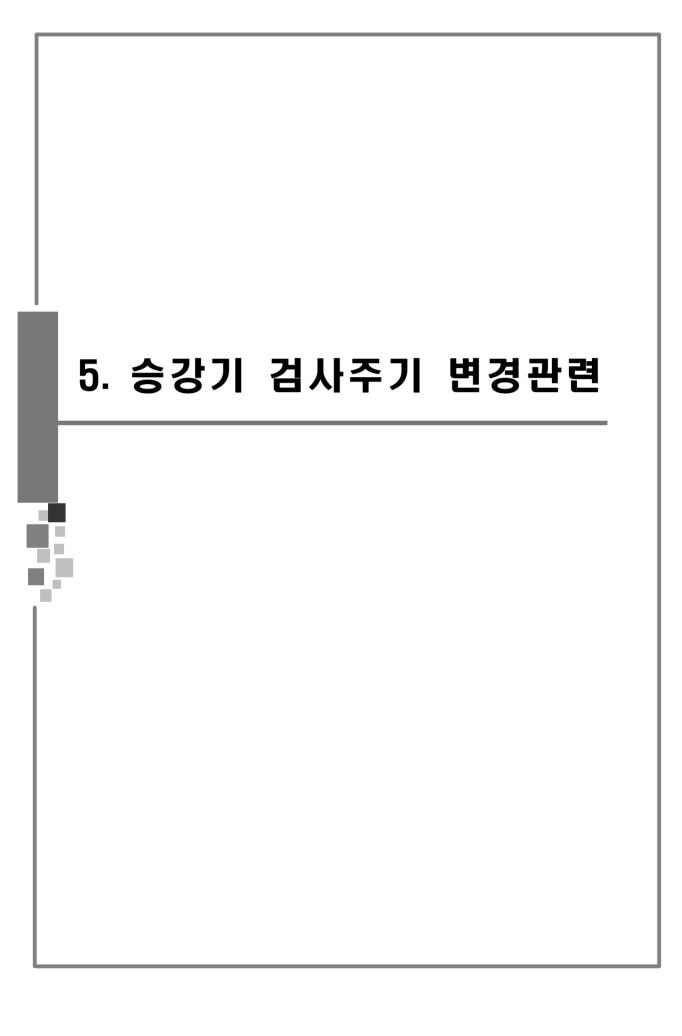
그리고,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지사(사업장)가 추가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사(사업장)가 추가된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점(지사)이 추가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사(사업장)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최소 책임기술인력 1명 및 일반기술인력 4명, 설비의 등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사(사업장)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질의내용】

- · 승객/화물용, 승객/장애/화물용 승강기처럼 승강기 용도에 화물용이 일부 포함 되어 있는 경우도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되는지?
- 2년 검사주기 화물용 승강기를 1년마다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 검사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제3호에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규칙 별표1 제2호가목1)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정의하고, 제2호가목9)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화물운반 전용승강기에 한하여 검사주기가 2년으로 변경됩니다.

검사주기가 2년으로 연장된 숭강기가 검사주기 도래일 이전에 정기검사 수검을 원하는 고객은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검사신청안내문을 받아 정기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관련

5-2 정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질의내용】

- ·정기검사 6개월 검사주기는 어떤 승강기가 적용되나요?
- 6개월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규칙 시행(2019.03.28.) 이후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칙 시행(2019.03.28.) 이전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지난 승강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정기검사를 받은 날이 6개월이 지난 승강기(주기 도래일이 2019.09.27.이전)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2019.05.27.)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3

【질의내용】

작년(2018년)에 갇힘 고장이 발생했는데 6개월 검사주기가 바로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일(2019.3.28.) 이후에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주기 변경(1년 → 6개월)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은 검사주기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일인 2019.3.28. 전에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고 장으로 인한 검사주기 변경(1년 → 6개월)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1. (생략)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u>승강기의 결함</u>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6.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6.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6-1 ┃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질의내용】

- · 경력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19.3.28.)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따라 다음의 승강기 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 2. 유지관리
- 3. 부품안전인증
- 4. 승강기안전인증
- 5. 설치검사
- 6. 자체점검
- 7. 안전검사
- 8..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 9. 승강기의 설치공사
- 10.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를 하신 뒤, 경력사항을 확인 후 '승인'처리가 된 경력신고 사항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따라, 경력증명서 최초 발급 시 3,000원, 재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참고: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내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화면



6.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6-2 ┃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

【질의내용】

- · 직무교육과정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직무교육과정의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3.28.)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직무교육은 자체점검자, 검사인력, 인증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 주기는 3년으로 3년마다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며, 교육시간은 28시간입 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승강기 기술자별로 법령, 인증, 검사, 안전기준 등에 대한 교육 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무교육을 받고 다음 주기의 직무교육을 받는 기술자는 교육시간을 14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도 됩니다. 또한 고급 자체점검인력 교육 또는 중급 자체점검인력 교육을 받은 기술자는 각각 고급 기술인력교육 또는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별표 1]

기술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제10조제1항 관련)

기술교육과정	교육대상자
1. 고급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기술인력 교육	(내용 생략)
2. 중급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기술인력 교육	(내용 생략)
3. 초급	승강기 기술자로서 고급 기술인력 대상자 또는 중급기술인력 교육 대상자
기술인력 교육	가 아닌 기술자

비고: 별표 3 제10호에 따른 고급 자체점검인력 교육 또는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중급 자체점 검인력 교육을 받은 기술자는 각각 제1호에 따른 고급 기술인력교육 또는 제2호에 따른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4]

비고 2.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을 받고 다음 주기의 직무교육을 받는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해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안전관리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6.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6-3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

【질의내용】

- ·기술교육과정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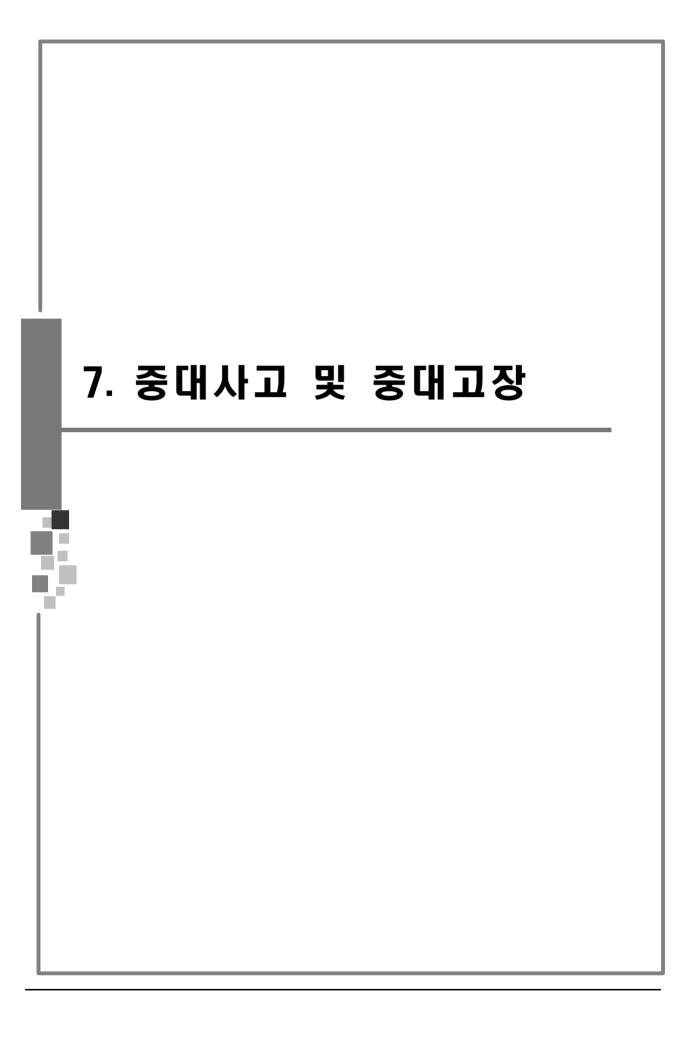
【회신내용】

기술교육과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3.28.) [별표 1]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별표 8]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기술자가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초급 기술인력 교육은 승강기 기술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증, 실무경력 등을 충족하고 해당 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해당 승강기 업종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술교육의 교육 시간은 28시간이며, 3년 주기로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고급 또는 중급 교육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7.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7-1 ┃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관련

【질의내용】

사고, 고장 발생 시 신고의무자가 기존에는 관리주체에 있고, 미신고시 행정처분도 관리주체에만 해당되었는데, 신고의무자가 유지관리업체로까지 확대되면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신내용】

종전에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주체에게만 과태료 처분하였으나, 유지관리업체로까지 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 19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7.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7-2 ▌중대사고 대상 변경 관련

【질의내용】

중대사고의 범위가 기존에는 이용자의 사고로 국한되었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중대사고에서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회신내용】

종전 중대사고의 정의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 사고에 국한되었었고, 개정법에서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로 변경되어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중 피해정도가 법에서 규정(사망, 1주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한 범위에 해당될 경우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중대사고 예외조항으로 "천재지변이나 정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법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중대 사고 정의	시행규칙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다.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가 발생한 사고

7-3 ▌ 중대고장에 해당하는 사례

【질의내용】

중대고장의 범위 중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회신내용】

중대고장의 범위는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5가지, 에스컬레이터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라목은 "갇힘"을 전제로 하고, 카에 탑 승하여 문이 닫히고 운행되지 않은 상태로 갇히게 되는 상황이고, 마목은 운행 중 급정지 후 갇히게 되는 고장이며, 이 때 구출운전으로 승객이 갇히지 않을 경우는 중대고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 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7.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7-4 │ 승강기의 결함 판단 기준

【질의내용】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승강기의 결함"으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밀안 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승강기의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회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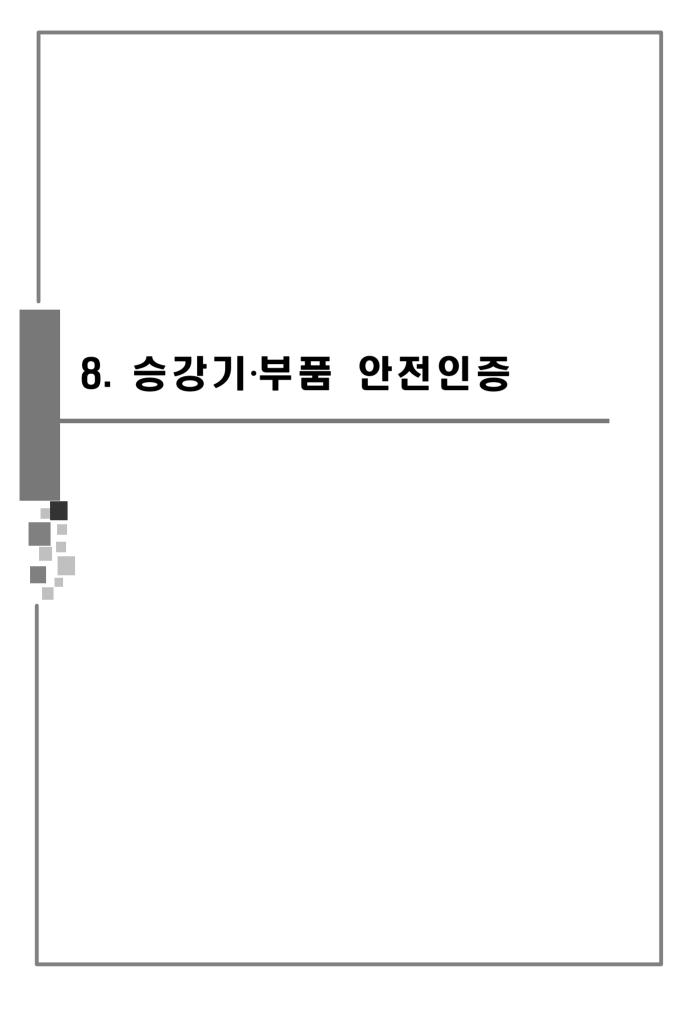
승강기의 결함은

첫째, 제조 및 설치과정에서 부품을 누락하였거나 불량부품으로 설치된 경우

둘째,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기준(검사기준, 자체점검기준, 제작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변형, 변경 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단, 제어반 ON/OFF 조작으로 리셋되는 현상, 도어스위치 순간적인 단락, 인버터 에러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의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승강기의 결함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고조사반(초동조사반, 전문조사반)에서 먼저 판단하고, 사고조사반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8-1 ┃ 안전인증 대상은 어떤 것인지?

【질의내용】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회신내용】

-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 참조
- 2.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참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1. 개문출발방지장치 (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유압으로 구동되는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5. 비상통화장치 6. 상승과속방지장치 (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means) 7. 완충기 8.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9. 이동케이블 10. 제어반 11.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12. 출입문 잠금장치 13. 출입문 조립체 14.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에스컬레이터	 과속역행방지장치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구동 체인 디딤판 디딤판 체인 제어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분류기준 제외 발췌)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ᆚ	1) 전기식 엘리베이터
가.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1) 에스컬레이터
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디 회케이지교도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다.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1) 승객용 엘리베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가.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나.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다. 휠체어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니. 될세이니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8-2 ▼ 종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받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은 유효한지?

【질의내용】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도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바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 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본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 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이하 생략)

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시험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

【질의내용】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도 개정된 법 시행 즉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부품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8-4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내용】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기존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한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부품안전인증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 9, 1.3(3)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로서 해당 시험 또는 안전 성 평가를 받은 날(이하 "종전안전성평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종전안전성평가일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 2. 종전안전성평가일부터 4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8-5 ┃ 부품안전인증 중 제어반에서 PESSRAL 또는 PESSRAE 적용 시기는?

【질의내용】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서 안전회로의 전자부품 사용에 대해 검증하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준비 기한도 없이 개정 법 시행 즉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후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어반에 적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2020.3.28. 전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어반의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에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인증 시 적용)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부칙

제2조(제어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4.4·5.4, 별표 16의 4.4·5.4, 별표 22의 15.2.6, 별표 23의 15.1.3.3 및 별표 24의 5.12.2.6.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에 적용한다.

8-6 │ 승강기의 전자파 시험과 관련하여 전파법에 따른 성적서도 인정되는지?

【질의내용】

승강기의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하여「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은 승강기도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파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3호에 따라「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증명도 인정이 가능하며,「승강기 안전관리법」제1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시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사후관리 제도가 없으므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 시 대표모델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받아야 됨을 안내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 3.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4.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

8-7

한국산업기술시헙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인증서 및 부품 인증서(K마크)도 인정되는지?

【질의내용】

기존에 한국산업기술시헙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인증서(KC인증)와 승강기부품에 대한 심사 및 시험을 하고 KTL 자체규정에 따라 발급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이되는지?

【회신내용】

원칙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1. 한국산업기술시헙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의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
 - 종전의「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승강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임의인증) 제도는 폐지됨(2017.1.27.)
 -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전 접수되어 「승강기 안전 관리법」시행일 당시(2019.3.28.) KC인증으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경우 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 참고로, 전기용품안전인증으로 인정이 되어「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 기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더라도 해당 인증서는 종전에 건축허가(2019.3.27. 이전)를 받은 승강기에만 적용할 수 있음.
- 2. 한국산업기술시헙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와 관련된 K마크 인증서
 -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함
 - * 다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 해당 모델에 대해 시험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부품안전인증 을 받아야 함
 - 전자파에 대한 K마크 인증서는 시험기준이 최신판을 적용한 것이면 인정함
 - * 전파법에 따른 KN 시험기준 또는 최신판 KS B 6945, KS B 6955일 것
 - * 한국산업기술시헙원(KTL)에서 발급한 전자파 시험성적서의 경우도 최신판 시험기준으로 시험받은 것을 증명하면 인정 가능함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 제2조(부품안전인증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 준」 별표 9, 1.3(3)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로서 해당 시험 또는 안전성 평가를 받은 날(이하 "종전안전성평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제2호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종전 안전성평가일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 2. 종전 안전성평가일부터 4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8-8 ┃건축허가와 출고 또는 통관일자에 따른 개정 법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내용】

승강기를 설치할 건물의 건축허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일(2019.3.28.) 전이고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일은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의 적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일이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대상 중 일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개정 법 시행일 (2019.3.28.) 전인 경우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승강기의 모델구분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이전임을 증명하는 경우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 (KETF)에 등록된 승강기 모델명을 기준으로 승강기의 모델을 구분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4조(승강기설계심사 및 승강기안전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의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설계심사와 승강기안전성시험 또는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설계 심사를 할 수 있다.

8-9 ┃ 안전인증의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는 무엇인지?

【질의내용】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출고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전인증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1. 안전인증의 신청주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함

2. 출고의 정의

승강기 출고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른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하므로 승강기 출고 증명서는 공장(제조 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종류	구분 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業)
나. 승강기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

8-10 ┃ 동일 제조공장 수입업자 중 동일모델 수입과 다른 모델 수입의 차이점은?

【질의내용】

동일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를 수입하는 수입업들이 있을 때 동일모델을 수입하는 것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차이점이 있는지?

【회신내용】

하나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에 대한 동일모델 수입과 다른 모델 수입은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 절차의 차이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1. 동일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 최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고 안전인증서를 발급함(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
 -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증명서류(국외 제조사와의 계약서 등, 최초 수입업자가 확인한 동일모델 확인서와 안전인증서 사본 등)와 함께 시행규 칙 제17조 및 제33조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면제확 인서를 발급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함
 - 2.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 한 수입업자가 하나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에 대해 추가로 다른 모델을 수 입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하나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에 대해 수입업자 간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 우에는 수입업자별로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를 모두 적 용 받음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포함된 공장심사 의 생략에 대한 것은 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업자에 해당함

8-11 ┃ 제조공장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수공장으로 인정 가능한지?

【질의내용】

한 제조업 등록업자의 제조공장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수공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가 다른 경우 다수공장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별로 각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제조공장별로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을 합니다. 다만, 안전성시험의 경우「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공장의 시료에 대해서만 안전성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업자의 국외 제조공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12 ┃ 상호인정협정 된 외국의 기관 또는 인정되는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내용】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인정 가능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신내용】

현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4호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 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 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승강기는 제18조 참조

8-13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제조업자(A)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B)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업자(B)가 판매업자라면 제조업자(A)가 제조업자(B)에게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판매한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 신청 및 사후관리(품질보증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원 제조업자인 제조업자(A)의 책임이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그 승강기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업자(A)의 회사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승강기의 대여업자
 -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 공사업자
 -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8.2.3.2 카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 가) 제조 수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 나) 승강기번호

- 다) 승강기안전인증 번호 및 표시
- 라) 정격하중(kg) 및 정원(인승)

8-14 ▼ 종전에 검사특례를 받고 적용하던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종전에 검사특례를 받고 적용하던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종전의 검사특례가 유지되는지?

새로운 검사특례 또는 신개발된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검사특례는 승강기의 검사(설치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대해 특수 구조승강기에 대한 대체검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던 것으로,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 리법」시행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 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특수한 구조이거나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 15조 및 제31조에 따라 새로운 안전기준 제정 요청을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종전의 검사특례를 받은 승강기부품 중 매다는 장치(벨트, 플랫벨트, 6mm 로프) 는 추가 시험 및 사용 환경 지정 등을 포함하여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영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준
- * 승강기는 제31조 참조

8-15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는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가 있는 경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 및 제18조, 영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규칙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합성을 증명하는 경우 안전인증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중 략)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중 략) -----

-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 3.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과 동일한 경우
- 4.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비를 위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 * 승강기는 해당 법 조항 참조

8-16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내용】

시행규칙에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은 어떤 의미이며, 다른 시험기관(국내, 국외)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에 대한 의미는 부품안전인증의 부품안전성시험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의 다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시험성 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활용하려는 경우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단과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시험성 적서만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의뢰는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공단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 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 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2.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 사기관
 -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8-17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제어반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제어반은 종전의 안전회로기판 시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법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한 안전회로기판을 사용하는 제어반의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품정기심사를 받으면 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인쇄회로기판으로 안전회로를 구성하였으나 종전 법령에 따른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적용을 제외받은 경우에도 특례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 개정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회로를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하지 않고 시퀀스 등으로 구성하여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기계적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험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 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8-18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에스컬레이터 구동기는 종전의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 시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법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한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구동기의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스컬레이터 구동기로 부품정기심사를 받으면 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 개정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 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8-19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는 구성별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는 주요 구성이 정지요소(전자-기계 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등)와 제어회로(제어반, 안전회로기판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지요소 또는 제어회로로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내용】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7 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으로 부품안전인증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하위 시스템은 감지와 작동을 위한 제어회로(제어반, 회로기판 등)와 제동을 위한 정지요소(브레이크, 감시장치 등)를 의미하며, 두 가지로 나누어 안전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위 시스템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하위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으로 결합될 때의 연결 조건 및 하위 시스템의 관련 파라미터가 정의되므로 이런 조건 등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8-20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이동케이블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이동케이블은 종전에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15 이동케이블 안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인용한 것이므로 종전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에서시험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에 따른 이동케이블 사양은 부품안전인증 시 부품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험 제외를 받을 수 있으며,시험성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성시험을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이동케이블과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개정된 최신판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추가 시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21 ┛출입문 조립체 중 카문, 비상가이드, 문짝의 두께의 적용방안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출입문 조립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카문 조립체도 강도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 2. 비상가이드 적용방법이 변경된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 3. 문짝의 두께가 다르면 기본모델을 달리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출입문 조립체 부품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1. 카문 조립체에 대한 강도시험은 카문의 문짝이 유리를 포함하는 경우 출입문 조립체 강도시험 대상이 됩니다. 카문의 문짝이 유리를 포함하지 않고 금속 재질로만 구성된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모든 수평개폐식 승강장문 조립체는 부품안전인증 대상입니다.
- 2. 종전에는 하부 안내수단에만 비상가이드 장치가 설치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부 안내수단에도 비상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3. 출입문 조립체 구성 중 조립체의 다른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 문짝의 두께만 다른 경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9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에 따라 문짝의 두께별로 부품안전성시험은 하고 기본모델로 분류하지는 않고 파생모델로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22 ┃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단일품을 2개 이상 적용하여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방지안전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등과 같이 적용하중에 영향을 받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단일품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2개 이상을 고하중 승강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이 조합도 부품안전인증을 받아 야 하는지?

- 예) 추락방지안전장치 단일품으로 인증 시 적용하중: 5,000 kg
 - 5,000 kg으로 인증받은 부품 2개를 설치하여 적용하중 10,000 kg에 사용

【회신내용】

인증 받은 부품을 조합한 형태는 새로운 모델로서 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8-23 ┃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개문출발방지장치 정지부품으로 겸용 사용 관련

【질의내용】

엘리베이터 구동기의 전자-기계 브레이크(이중 브레이크)를 개문출발방지장치 또는 상승과속방지장치로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 부품안전인증 시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 품안전성시험적용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회신내용】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자-기계 브레이크(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1 참조)이며, 이 브레이크가 이중브레이크(개문출발방지장치안전기준 4.2 참조)로 인정되는 경우 개문출발방지장치정지부품으로서 부품안전인증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7 개문출발방지 장치 안전기준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이중브레이크의 작동성능 검증과 각 각의 브레이크 제어시스템 및 제동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 준 5.1 참조)을 추가로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상기의 추가 시험은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3년 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행 전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 전자-기계 브레이크

13.2.2.2.1 이 브레이크는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최소한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구성요소의 고장으로 브레이크 세트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 또는 빈 카로 상승하는 카를 감속,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를 위한나머지 하나의 브레이크 세트는 계속 제동되어야 한다.

솔레노이드 플런저는 기계적인 부품으로 간주되지만, 솔레노이드 코일은 그렇지 않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7] 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4.2 정지부품

정지부품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 정지부품의 종류]

부 품 명	기 능	비고
로프 제동형 브레이크	유압원(fluid source) 및 기계적 수단(mechanical means)을 이용하여 개문출발 발생 시 주 로프 또는 보상로프를 제동시킴으로써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	로프 브레이크 등
주행안내 레일 제동형 브레이크	카 또는 균형추에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개문출발 발생 시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	양방향 추락방지안전 장치 등
이중 브레이크	권상도르래(두 지점에서만 정적으로 지지되는 권상 도르래와 동일한 축)에 설치된 브레이크로 모든 기계적 요소(솔레노이드 플런저는 포함하며, 솔레 노이드 코일은 제외한다)가 2세트로 설치된 구조 이며, 하나의 부품이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의 부품으로 제동력이 확보되는 구조	디스크식, 드럼식
권상기 도르래 제동형	권상도르래를 직접 제동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	Sheave Jammer 등
유압 밸브	직렬로 연결된 2개의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 밸브를 이용하여 개문출발 발생 시 유체 흐름을 통제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	Lock밸브 등

5 안전 요건(성능)

5.1 엘리베이터에는 카의 안전한 운행이 좌우되는 구동기 또는 제어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부품고장의 결과로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고 카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개문출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8-24 ┃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처리기간과 정기심사 신청 기한은?

【질의내용】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정기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 부품안전인증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 2. 승강기안전인증 처리기간
 - 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 3. 정기심사 신청 기한(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
 - 가) 부품안전인증 정기심사: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 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정기심사: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 (중 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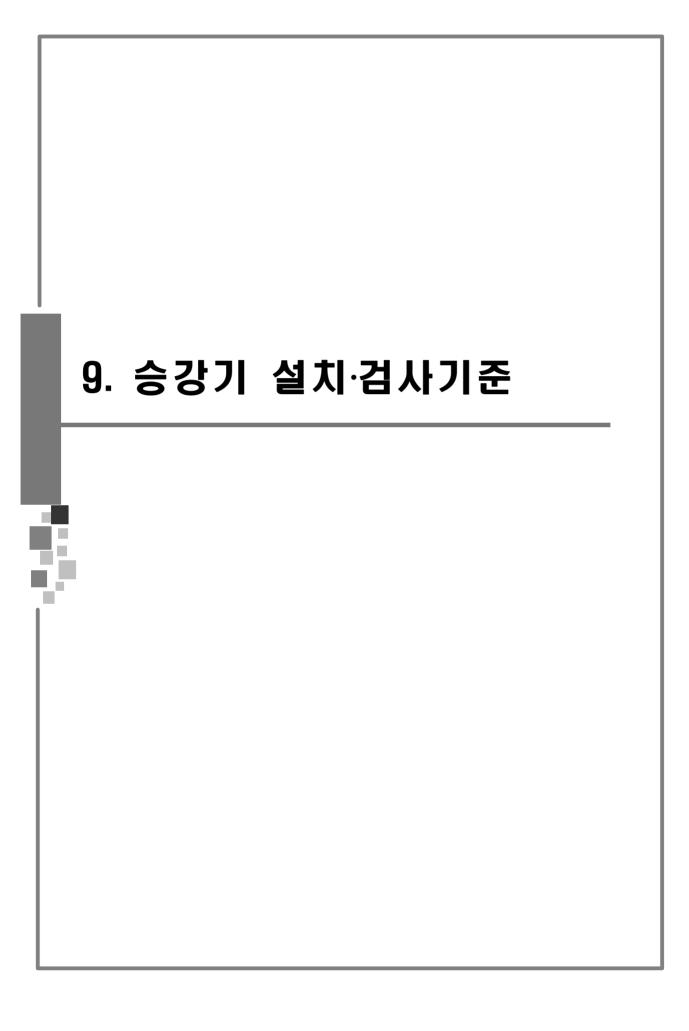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 (중 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 (중 략)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9. 승강기 설치·검사기준

9-1 ┃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질의내용】

- 1. 종전 특수구조승강기는 안전성평가를 받아 대체검사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법 적용의 경우 종전 대체검사기준은 유지되는지?
- 2.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특수구조승강기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 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승강기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이후(2019.3.28.) 출고되는 승강기부터 "안전인 증"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u>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u> 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 2.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준

- 1. 정밀안전검사에 소급 적용되는 부품 중 일부 성능에 대한 자체 안전성을 증명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아 제출하면 되는지?
- 2. 소급 적용되는 부품 중 안전성을 확인해야하는 부품은?

【회신내용】

개정되는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 21년이 지나 세 번째 받는 정밀안전검사부터 적용되는 추가 부품은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제조·수입업자는 해당부품의 안전인증서 또는 공단의 안전성평가를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밀안전검사에 소급적용되는 부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적합성확인부품	
엘 리 베 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3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안전성평가)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안전인증)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안전인증) 브레이크시스템 (안전인증 또는 안전성평가)
에 스 컬 레이터	주 브레이크, <u>보조 브레이크, 과속 · 역전방지수</u> 단, 스커트 디플 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보조 브레이크 (안전인증 또는 안전성평가) 과속・역전방지수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성평가)

- 1. 정밀안전검사에 소급 적용되는 부품의 적용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 2. 21년 또는 24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명확한 의미는?

【회신내용】

개정되는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경과조치를 따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 1. 사용중인 승강기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 2. 법 시행일 이후 검사판정 기준 적용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제1항2호에 따라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하여 승강기 설계를 변경되거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등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의 종류 등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강기 설계와 관련된 기술 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어반 등 중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각 부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판정기준은 교체된 부품에 대하여 새로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판정 합니다.

구분	설계변경	부품변경
변경사항	승강기종류, 정격속도, 정격하중 및 왕복운행거리 등	안전인증 부품 교체 (제어반, 구동기 및 안전인증 대상부품)
필요서류	1. 설계변경계약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서 2. 설계계산서(각 1부) ① 권상평가 계산서 ② 매다는 장치 계산서 ③ 주행안내레일 계산서 ④ 구동기 설치 지지부의 강도 계산서 ⑤ 카 조립체의 기계적 강도 계산서	교체부품의 안전인증서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14종 - 에스컬레이터 6종

- 1.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의 안전검사 특례인증에 해당하는 의미?
- 2. 안전검사 특례인증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회신내용】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그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안전검사 특례인증 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 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에 대해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는 승강기 또는 기타 장치를 추가한 승강기(밑의 표 참고)에 한하여 적용 하며,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는 제 외됩니다.

<표. 안전검사 특례인증 대상 구분>

구분	주요변경사항	대상여부
설계/기능변경	"승강기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계변경 예) '19.3.28이후 안전인증을 받고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 중 설계 변경한 승강기	대상
기타 장치추가	승강기 설계와 관련 없고 이용편의를 위한 장치 예) 핸드레일 소독기, 이동통신 중계기 등	대상
부품교체	제어반, 구동기 및 안전인증 대상부품(20종) (인증부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	제외

- 1. 종전의 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승강기 중 설치검사를 받으려면 부품교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2. 승강기만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건축허가(신고)가 필요없는데 공사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준적용을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사용하는 승강기 교체를 통해 설치검사를 받으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승강기 교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는 승강기 교체는 승강기 종류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 균형추(均衡鎚), 기계대(機械臺),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출입문의 문틀
 - 2) 에스컬레이터 : 골조 구조물(Truss),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승강장의 보호수단

검사기준 적용일은 건축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공사계약일"을 적용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가. 균형추(均衡鎚)
 - 나. 기계대(機械臺)
 -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 라. 주행안내 레일
 -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 바. 출입문의 문틀
-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가. 골조 구조물(Truss)
 -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 1. 사용 중인 승강기 중 운행과 직접 관련된 부품을 교체(제어반 + 구동기)하는 경우에 종전 적용과 같이 수시검사 대상인지? 설치검사 대상인지?
- 2. 수시검사일 경우 기준적용일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 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만 설치검사 대상입니다. <참조> 제외부품.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 균형추(均衡鎚), 기계대(機械臺),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출입문의 문틀
- 에스컬레이터 : 골조 구조물(Truss),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승강장의 보호수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가. 균형추(均衡鎚)
 - 나. 기계대(機械臺)
 -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 라. 주행안내 레일
 -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 바. 출입문의 문틀
-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가. 골조 구조물(Truss)
 -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 1. 승강기의 통관일은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통관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제품출고일은 공장에 일부부품 출고, 물류창고 발송 등으로 제조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물류창고 발송일자 가능? 공장 출고일자 가능?
- 2. 제조사에서 제공해야 하는지? 물류창고의 발송장으로 가능한지?

【회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적용은 승강기법 시행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에 대한 출고일 또는 통관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 출고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른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하므로 승강기 출고 증명서는 공장(제조 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u>"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1. 개정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시기 및 검사판정?
- 2. 건축허가일이 '19.3.27일 전인 경우 설치검사는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데 설치검 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이하 "종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검사기준은 고시 시행일('19.3.28) 이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하고 판정기준은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라 판정하므로,

건축허가일이 '19.3.28일 이전이고 시행일 이후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검사기준은 개 정검사기준을 적용하지만 판정은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